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정부의 수사권 간 충돌 이슈

격주간 보고서 2020년 6월 2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정부의 수사권 간 충돌 이슈

< 목 차 >

- 1. 배경
- 2. 주요 사례
- 3. 주요 이슈와 시시점

1. 배경

- ▶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법집행 기관의 데이터 접근 요청 사이의 충돌 사례가 증가
 - 최근 국내 통신사들이 적정한 통보 절차 없이 공공기관 등에 고객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제공한 사실이 공개되며 헌법소원 제기¹
 -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만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처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경찰에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온 기업에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암호해제부터 범죄자들이 이용한 인터넷 검색 결과 및 메시지 송수신 내역 열람에 이르기까지 수사 목적의 데이터 공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 가열
 -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데이터 공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견해와공익 목적의 수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 대립
 -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와 수사권 행사를 둘러싼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과 법집행 기관 사이의 충돌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

¹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418053161029a8c8bf58f_12

2. 주요 사례

(1) Apple

- ▶ Apple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iCloud에 저장된 사용자의 백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이상의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 Apple은 2015년 미 캘리포니아주 총기 테러 사건 해결을 위해 용의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우회하여 단말기 잠금 해제가 가능한 'iOS 백도어'를 제공하라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을 거부한 이래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 당국과 긴장을 유지
 - 당시 FBI는 백도어 요구가 공권력 행사를 위한 정당한 협조 요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Apple은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박
 - Apple은 휴대 전화의 데이터를 해독하고 침입하면 모든 사용자의 보안이 약화 될 것이라는 일관된 논리로 수사 기관에 대응
 - 2020년 2월에는 플로리다 해군기지에서 선원 3명을 살해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용의자의 iPhone 단말기에 대한 FBI의 잠금해제 요청을 Apple이 거부하면서 다시 이슈화
 - FBI는 일명 'GrayKey'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Apple의 지원 없이 암호 크래킹을 통해 단말기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
 - 한편, Apple이 iCloud의 백업 사본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기관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는 주요 메모 내용, 계정 정보, 거래 데이터 등이 포함되므로, 법적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대해서는 iPhone 및 소유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양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²

(2) Microsoft

- ▶ Microsoft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에 대해 미국의 형사사건 사법당국이 검열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 법무부 대 Microsoft' 사건은 고객 개인정보보호 요구와 법집행 당국의 수사협조 요구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
 - Microsoft와 미 법무부의 분쟁은 2013년 미 법무부가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Microsoft에게 이메일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시작

2 https://9to5mac.com/2020/05/19/apple-fbi/



- 당시 Microsoft는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나, 법무부는 MS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고 주장
- 미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7년 당시 미국의 저장통신법이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Microsoft가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 Amazon, Apple, Facebook, Google, Verizon, Reddit 등의 기술기업들을 비롯해 미국 상원의원 5명과 유럽의회 의원 10명도 Microsoft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
- 미 연방 대법원은 2018년 2월 Microsoft와 법무부 측 의견을 듣는 심리를 통해 법무부가 Microsoft에 대해 아일랜드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피의자의 이메일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4월 17일 심리를 최종 기각
- 2018년 3월 발효된 미 클라우드법(Clarifying Law Overseas Use of Data Act, CLOUD Act)에 따라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한 법리 논쟁이 무의미해졌기 때문
- 이 사례는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이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미국 기업이 저장 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주목

(3) Google

- ▶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 경찰이 2017년 은행 사기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한 사용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Google에 요구한 것과 관련,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 제기
 - 미네소타주 에디나(Edina)시 경찰은 피해자의 여권 사진을 위조해 팩스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은행 계좌에서 2만 8,500달러를 인출한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Google에서 피해자 이름을 이용해 사진을 검색한 것으로 의심
 - 미네소타주 법원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색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이 요청한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을 검색한 사용자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생일, 결제정보, IP 주소 등도 포함
 - 해당 영장 발부 사례에 대해 미국의 주요 언론과 개인정보보호 옹호론자들은 사소한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행위는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제기
 - Google 역시 수색영장이 '사용자 정보에 대한 지나친 요구'라고 언급하며, 항소 등의 방법을 통해 수색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반발
- ▶ 뉴욕시 경찰청(NYPD)이 Google을 상대로 특정 고등학생의 "디지털 이력 전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제시한 사례에서³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 확산

 $^{3\ \}underline{\text{https://nypost.com/2018/01/08/nypd-subpoenas-google-to-obtain-teens-online-history/}\\$

- Google은 2017년 12월 경찰로부터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이메일, 이력 및 기타 디지털 문서" 등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제시된 소환장의 사본에 경찰이 해당 청소년의 디지털 정보를 요구한 사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소환장에는 경찰의 디지털 정보 요구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사 및 법집행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90일 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
- Google은 2017년 12월 18일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7일 이내에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찰당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고지
- 시민단체와 개인정보보호 옹호론자들은 Google과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법원의 명령서와 적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
- 뉴욕시민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Christopher Dunn 수석변호사는 시민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원 명령이 아닌 행정 소환장을 사용하는 NYPD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

(4) Amazon

- ▶ Amzon의 스마트스피커 Echo에 녹음된 데이터가 범죄 수사에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법집행 기관의 접근 권한에 대한 관심도 고조
 - 미 아칸소 주에서는 2015년 한 남성이 욕조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수사 당국이 Amazon에 영장을 발부하여 용의자의 스마트스피커 오디오 녹음 데이터 양도를 요구
 - 경찰은 범행 당시 스마트스피커에 녹음된 음성과 소리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
 - Amazon은 미국 헌법의 수정 제1조 (First Amendment)에 따른 자유권을 근거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녹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
 - 그러나 범죄 용의자이자 해당 스마트스피커 소유자인 James Andrew Bates가 Echo에 녹음된 데이터를 전달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Amazon은 녹음 데이터에 대한 수색 영장 거부 방침을 철회

(5) WhatsApp

- ▶ 메시징 서비스 WhatsApp은 2017년 초 암호화 된 메시지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
 - 언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당시 WhatsApp과의 회의에서 암호 해제를 위한 백도어(back-door) 구축 문제를 타진



- 테러리스트 등이 WhatsApp이나 Telegram 같은 암호화 메시징 앱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 집행 과정에 지속적으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주장
- 당시 영국에서는 테러활동과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의 80%가 암호화된 메시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수사 당국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
- 이 문제와 관련, 영국의 정보당국 관계자는 메시징 앱 기술 업체들과 타협을 추진하는 한편 영장 발부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
- 그러나 주요 기술 업체들은 백도어를 구축할 경우 서비스의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

3. 주요 이슈와 시사점

- ▶ 범죄 용의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집행 기관들의 논리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소비자의 기본권 침해 및 기업의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
 - 미 FBI의 Christopher Wray 국장과 James Comey 전임 국장은 사법 당국이 강력한 암호 기술로 인해 전자 기기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범죄자 추적에 필요한 증거 수집 능력을 저해한다며 불만 제기
 - 기술 업체들과 디지털 보안 전문가들은 범죄 용의자의 개인 데이터 접근을 요구하는 수사 당국의 요구는 인터넷 보안에 해를 끼치고 비례성의 원칙에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우려
 - 이런 가운데,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serious interferences)"이 아닌 경우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전자통신 제공업체가 보유한 특정 유형의 개인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CJEU)의 판결4은 범죄의 중대성, 간섭의 심각성, 보호가 필요한 개인데이터의 유형 등에 관한하나의 기준을 제시5
 - CJEU는 2018년 10월 2일 도난당한 휴대전화 추적과 관련한 스페인 수사 기관의 데이터 확보 필요성에 관한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serious interference)'은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제

⁴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docid=2063328/mode=reg8pageIndex=18dir=8occ=first8.part=18text=8.ddang=EN8cid=252986

⁵ https://edri.org/cjeu-introduces-new-criteria-for-law-enforcement-to-access-to-data/

- 그러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열람이 '심각한 간섭'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성명과 주소 등의 데이터는 위치정보와 통화내역과 달리 심각한 간섭을 야기하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설명
- 이상에서 검토한 사례와 이슈는 법집행기관의 수사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시민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 및 기본 권리로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명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Reference

- 1. 9to5 Mac, Comment: Here's how to explain the Apple/FBI debate to your non-techy friends, 2020.5.19.
- 2. Bar&Bench, Illegal tapping of phone calls violates Right to Privacy: Bombay HC sets aside interception orders issued by Home Ministry, 2019.10.23.
- 3. Forbes, FBI Hacks iPhones In Pensacola Terrorist Shooting Case, But The War With Apple Goes On, 2020.5.18.
- 4. Forbes, Feds Can't Force You To Unlock Your iPhone With Finger Or Face, Judge Rules, 2019.1.14.
- 5. Government Technology, Microsoft Sues Government Over Demands for Consumer Data Under Order of Secrecy, 2016.4.15.
- 6. NBC, iPhone spyware lets police log suspects' passcodes when cracking doesn't work, 2020.5.18
- 7. New York Times, F.B.I. Asks Apple to Help Unlock Two iPhones, 2020.1.7.
- 8. NYPD subpoenas Google to obtain teen's online history, New York Post, 2018.1.8.
- 9. Reuters, FBI chief calls unbreakable encryption 'urgent public safety issue', 2018.1.10.
- 10. The Verge, The FBI has asked Apple to unlock another shooter's iPhone, 2020.2.7.
- *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고(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잠그고(GO)!

개인정보보호 해외 동향 6월 격주 보고서는 2020년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기구(APPA)와 공동 주최하는 '개인정보보호인식주간'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개편 홍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구○식'님의 요청 주제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발행 일 2020년 6월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301-2) Tel 1544-5118

- ▶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해외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